

대학원 종합시험 시행내규

제1조 (목적) 대학원 학칙에 규정한 종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전공어학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박사학위규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한 자
-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과 : 2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 포함 18학점이상(인정학점포함) 취득예정자
 2. 교회음악학과, 기독교교육학과 : 3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 포함 24학점이상(인정학점포함) 취득예정자
 3. 사회복지학과,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 3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포함 1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개정 2011. 6. 24.>
-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대학원 :
 - (가). 5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포함 75학점이상 취득예정자 <개정 2011. 2. 25., 2014. 12. 27.>
 - (나). 졸업종합고사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까지 평균평점이 4.20 이상인자는 졸업종합필기고사를 면제하며, 평균평점이 4.20미만인 자는 졸업종합필기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1>
 2. 사회복지대학원 : 3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 포함 1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개정 2012. 4. 20.>
 3. 상담대학원 : 4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 포함 24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4. 설교대학원 : 3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 포함 24학점이상(인정학점포함) 취득예정자<개정 2016. 4. 6.>
- ④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21학점이상 취득한 자 <개정 2012. 3. 21., 2014. 12. 27.>
- ⑤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3차 학기이상 등록한 자로서 해당학기 포함 15학점이상(인정학점포함) 취득예정자<개정 2014. 12. 27.>

제3조 (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조 (시험일자) 종합시험은 매 학기 중반에 실시하며 2주전에 실시 공고를 한다.

제5조 (시험종류)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 2014. 12. 27.>

제6조 (필기시험) 종합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1. 과목

가. 각 전공별로 그 전공에 필수적인 사항을 문제은행식으로 20문제 정도를 만들어 입학당시에 공지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공부함으로 전공에 관한 총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개정 2007. 9. 1. 2011. 6. 24., 2014. 12. 27.>

학과	전공분야	전공과목	비고
신학과	구약학	각 전공별 문제은행 20문제<개정 2014. 12. 27.>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신학, 기독교교육행정, 기독교교육교사론,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과정론, 기독교가정교육 중에서 택3	
교회음악학과	공 통	음악사 (교회음악사를 중심으로)를 포함하여 3과목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세미나, 가족치료세미나, 질적연구방법론<개정 2014. 10. 10.>	
	사회복지정책	고급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아동복지정책연구	

나. 삭제 <2007. 9. 1>

2. 과목당 시험시간 : 90분 이상 <개정 2007. 9. 1>
3. 출제위원 : 원장과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7. 9. 1>
4.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한다. 불합격한 과목은 1학기 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각 전공별로 전공서적을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 한다

<개정 2007. 9. 1., 2014. 12. 27.>

학과	전공분야	전공과목
신학과	구약학	각 전공별 전공서적 선정 <2014. 12. 27>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학	기독교교육신학, 기독교교육행정, 기독교교육교사론, 기독교교육사, 기독교교육과정론, 기독교가정교육 중에서 택2
교회음악학과	공통	교회음악사, 고등악리
사회복지학과	공통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
보육학과	공통	유아교육론, 아동발달론
유아교육학과	공통	유아교육과정, 놀이이론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한다. 1과목 이상 합격하였을 경우는 나머지 과목을 1학기 후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

③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1. 신학대학원

가 .공통문제 - 성결교회의 핵심교리<개정 2014. 12. 27.>

나. 각 전공에서 3문제정도 문제은행을 만든다.<개정 2014. 12. 27.>

2. 사회복지대학원

1) 기초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중 1과목 선택

2) 실천론과목 :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중
1과목 선택

3) 정책론과목 :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중 1과목
선택

3. 상담대학원

공통필수(상담이론과실제, 정신분석학, 상담신학), 전공개론(각전공:가족치료,
목회,청소년) <개정 2008. 3. 1., 2012. 9. 1., 2014. 10. 10., 2014. 12.
27.>

4. 설교대학원

「자신의 설교관」이나, 「1년 설교계획」을 프로젝트로 대신한다.<개정 2016. 4. 6.>

④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

1. 신학전문대학원 신학과

각 전공별로 그 전공에 필수적인 사항을 문제은행식으로 20문제 정도를 만들어 입학 당시에 공지하고 학생들이 이 문제들을 공부함으로 전공에 관한 총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개정 2012. 3. 21.> <개정 2014. 12. 27.>

학과	전공분야	전공과목
신학과	구약학	각 전공별 문제은행 20문제<개정 2014. 12. 27.>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선교신학	
	상담심리학전공	

⑤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각 전공별로 전공서적을 선정하여 문제를 출제 한다<개정 2014. 12. 27.>

학과	전공분야	전공과목
신학과	구약학	각 전공별 전공서적 선정 <2014. 12. 27>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	
선교학과	선교신학	

제7조 (구술시험) 종합구술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일 2012. 4. 20., 2013. 9. 1.>

① 박사학위과정

구술시험은 논문구술심사로 대체하여 실시한다.

② 삭제<개정 2016. 4. 6.>

제8조 (출제위원) 출제는 원장이 과목별 해당 전공학부 주임교수에게 의뢰한다. (단,

박사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배점 및 합격기준) 모든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의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10조 (합격결정) 종합시험의 시험결과는 각 전공학부주임을 거쳐 원장의 결재로 한다.

제11조 (내규의 개·폐) 이 내규의 개정 및 폐지는 각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 <개정 2012. 3.21>

부 칙

내규는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 3항 1에 “나”는 2004학년도 1학기 응시자부터 적용하며, 과락 재응시자에게도 기준평점에 해당하면 면제한다.

부 칙

- ①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 3항 1에 “나”는 2007학년도 1학기 응시자부터 적용하며, 과락 재응시자에게도 기준평점에 해당하면 면제한다.

부 칙

- ①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3조(응시자격) ③항 1호의 “가”목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필기시험) ①항 1호 “가”, ②항 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응시자격) ④항 및 제6조 (필기시험)⑤항은 2012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③항 3호는 2011학년도 입학자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 응시자격 ③, ④, ⑤항, 제5조 시험종류, 제6조 필기시험 ①, ②, ③, ④, ⑤항은 2017학년도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